

제재내용 공개안

1. 금융기관명 : 삼성생명보험(주)

2. 제재조치일(검사서 통보일) : 2026. 6. 18.

3. 제재조치내용

제재대상	제재내용
직 원 등	(보험설계사) 업무정지 90일(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) 1명

4. 제재대상사실

(1)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

보험계약자, 피보험자, 보험금을 취득할 자,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

삼성생명보험(주)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A의원에서 실제 도수치료를 받지 않은 날짜가 기재된 허위 진료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2018.12.17. ~ 2019.4.29.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B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428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

< 관련규정 >

1. 「보험업법」 제102조의2
2. 「보험업법」 제102조의3